





소비자 권익보호에  
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정보 조치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 
 ※ 아래 동의 사항을 읽고 동의하는 경우 각 동의함에 체크(☑)하여 주시고,  
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(후견인)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 ※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「피보험자」란 한 쪽에만 동의 체크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.

01

개인(신용)정보 등의  
수집·이용에  
관한 사항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 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- 개인(신용)정보 등의 수집·이용 목적  
 보험금 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 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 계약유지·관리, 보험금지급관련 분쟁대응 및 고객이력관리, 민원처리 및 소비자 보호, 증빙서류보존, 이체(R/T, 자동이체 포함) 및 입출금 업무
- 수집·이용하는 자  
 당사(삼성생명)로부터 보험금 지급·심사, 사고조사, 보험계약유지·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 받은 자 (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(주), 전산회사, 삼성생명 컨설턴트·보험대리점, 고객안내 발송대행 업체 등)
-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  
 【보험금 청구를 전후로 하여 당사 등이 수집·이용하는 다음의 개인(신용)정보 등】  
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, 계좌정보, 당사 및 타보험사(우체국보험, 공제사업자 포함)의 보험계약정보 및 보험금 지급정보(사고정보 포함),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[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류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포함]
-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기간  
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조사, 보험사기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이용하며, 별도보관)  
 ※ 거래 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거래관계가 계약의 만료, 해지·해제·취소, 소멸시효의 완성, 변제 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, 그 밖의 사유로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. 세부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.  
 [아래 「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」 및 「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」 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]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여부	피보험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수익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02

개인(신용)정보 등의  
조회에 관한 사항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정보 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- 개인(신용)정보 등의 조회목적  
 보험금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 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- 조회하는 자  
 당사(삼성생명)로부터 보험금지급·심사 및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[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(주)] 등
-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  
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 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피보험자의 질병 및 상해에 관한 정보
- 조회 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의 보유·이용기간  
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

개인(신용)정보 조회 동의여부	피보험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수익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
03

개인(신용)정보 등의 제공에 관한 사항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 수탁자가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 3 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■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
신용정보집중기관

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, 경찰, 검찰, 법원 등 국가기관

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 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당사로부터 보험금 지급·심사, 사고조사, 보험계약의 유지·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 받은 자(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(주), 전산회사, 삼성생명 컨설턴트·보험대리점, 고객안내 발송 대행업체 등), 이체(R/T, 자동이체 포함) 및 입출금 업무 관련 기관(계좌 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, 당사의 이체의뢰 은행)

의료기관 등 : 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, 의사, 변호사 등

■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 기간

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

■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
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업무

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

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보험계약 유지·관리 업무 및 입출금 등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, 이체 등) 관련 기관, 고객안내자료 제작 및 발송관련업무

의료기관 등 : 의료심사 및 자문, 소견서, 진료기록 열람,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업무 등

■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01 개인(신용)정보 등의 '수집·이용'에 관한 동의 항목과 동일

※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[<http://www.samsunglife.com>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개인(신용)정보 제공 동의여부	피보험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수익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
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당사 및 당사의 업무수탁자가 상기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민감정보(질병·상해정보)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운전면허증번호)를 처리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 등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질병(상해)정보 제공 동의여부	피보험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수익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
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여부	피보험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	수익자	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다수일 경우(다수의 수익자 및 다수의 상속인 등)이래 수익자 서명란에 전원 성명 기재 부탁드립니다.

피보험자	친권자 (부)	(모)
수익자	후견인	

신청일: 20   년   월   일

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귀중

# 보험금 지급절차 정보 안내 (고객보관용)

## 보험금 심사절차 안내



- ※ 보험사는 [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]에 따라 보험사고조사업무 등을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및 질병정보 등에 대한 수집·조사·조회 및 제공·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※ 심사전문회사인 삼성생명서비스 손해사정(주)는 보험사고조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, 삼성생명에 고객님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며, 현지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담당자가 고객님의께 별도로 연락을 드립니다.
- ※ 삼성생명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. 보험계약자 등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고, 그 비용의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-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
    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삼성생명에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을 때
    - 정당한 사유없이 삼성생명이 보험사고 통보(제 3 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합니다)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  - 계약자 등이 부담하는 경우
    - 삼성생명이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
    -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- ※ 독립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금의 대리청구,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## 보험금 지급지연 및 부지급 결정에 대한 안내

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그 사실을 고객님의 요청하신 방법에 따라 통보하게 되며, 약관에 정한 바와 같이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.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, 보험금 부지급 사유가 발생시 그 근거를 명시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. 부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심사 담당자 또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 등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- ※ 심사 지급기일은 3일 또는 10일 이내이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## 보험금 가지급제도

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여부 및 금액에 관한 심사를 위해 사실관계 등에 관하여 조사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어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, 청구 보험금 중 조사나 확인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
- ※ 가지급 보험금은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% 이내로 산정됩니다.

## 의료심사

장해, 진단급부 등 청구시 의료재심사 또는 제 3 의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고, 이 경우 비용은 삼성생명이 부담합니다.

## 보험사간 실손의료비 비례보상

의료비 실비를 보장하는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담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타사의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금 청구접수를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타회사에 자료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
- ※ 타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생명·손해보험협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.

## 분쟁조정 절차 및 피해구제

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## 회사의 손해배상책임

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.

##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(상법 제 662 조)

보험금 청구권, 보험료 반환청구권,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

## 심사 진행상황 안내

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(<http://www.samsunglife.com>)를 통해 청구하신 보험금 지급심사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문의는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청구서류와 관련한 사항은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언제나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,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

#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



※ 병원발급서류는 병명, 병원직인,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, 서류는 원본기준

공통서류								
구 분	진단서	사 망 진단서	후유장해 진단서	입/통원 확인서	재 해 입증서류	가족관계 등록부	기 타	
-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- 내방인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) - 통장사본(단, 수익자 본인 내방 또는 수익자 본인 계좌송금 시 제외) ※ 배우자, 자녀 보장상품은 보험대상자와의 관계확인서류 필요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)								※ FAX, 사본 접수 가능대상(사망/장해/진단 제외) - 진료비계산서상 본인부담총액 100 만원이하 (진료비계산서영수증 서류 추가 제출 필요) - 또는 청구금액 100 만원이하, 통원은 금액 제한 없음 ※ 법인·단체수익자의 경우는 수익자·실제소유자 확인서 必첨부 ※ 자금세탁방지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추가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발 급 처	해당 의료기관			관공서 * 민원24참고				
사망	일반사망	●				●	- 재해입증이 가능한 관공서 서류로 대체가능(교통사고사실확인 등) ※ 민원 24(www.minwon.go.kr) 등에서 발급 가능 -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(상기서류는 사망진단서 원본 제출 시 생략가능) ·사망수익자 미지정시 상속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舊(구) 제적등본 ·사망자가 기혼여성인 경우, 이혼/재혼했을 시 前(전)호주 제적등본 ·수익자기미성년자시 미성년자기준의기본증명서(상세),가족관계증명서(일부)	
	재해사망		●			●		
장해	일반장해			●			- 팔·다리관절 : AMA 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 포함)기재 - 척추장해 ·'05.4.1 일 이전 AMA 방식의 운동각도(정상운동각도포함)기재 ·'05.4.1 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·단, '99.2.1 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하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 - (일반)진단서 대체가능 ·만성신부전, 혈액투석(최초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) ·사지절단(절단부위명시) ·인공관절치환(치환일자, 부위 기재) ·신장, 비장 적출 시(적출일자, 부위 기재)	
	재해장해			●		●		
입원	●			●		●	-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(진단명, 일자 기재) - 재해입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	
수술	재해수술	●			●	●	- 재해입증서류(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) - 진단서 또는 수술확인서(진단명, 수술명, 일자, 방법 등 기재) - 신수술보장특약N : 진료비계산서, 급여수가코드 (EDI 포함) 명시된 진료비세부내역서(회사양식의급여수가코드(EDI 코드 포함) 확인서로 대체 가능)	
	중수술	●						
골절	●			●		●	- 골절 확인에 한함(의증 제외) - 진단서(or 소견서) 또는 입퇴원(통원)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	
통원	●			●		●	- 진단서(or 소견서 및 진료차트) 또는 통원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 - 정액통원(암/재해/특정상병)은 FAX 접수, 복사본 가능 - 재해통원의 경우 재해입증서류 필요	
치료	교통재해	●				●	- 교통사고사실 확인원(경찰서, 자동차보험사) - 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	
	상해치료	●				●	- 진단서 또는 입퇴원(통원)확인서(진단명, 일자 등 기재)	
진단	암	●					- 암 진단 확인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지 ※ 백혈병 - 골수검사지, 간/폐/췌장암- 방사선 판독결과지(조직검사를 못할 경우) 대체가능 - Stage CI 진단서: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(별첨) or 암 병기 명시된 서류(진단서/소견서) *표기 방식 : 종합병기/개별 T,N,M(例: 4기/T3N2M1) 단, TNM 병기 분류 불가시 대체병기 기재	
	뇌졸중	●					- CT,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	
	심근경색	●					- 각종 검사결과지(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, 심전도결과지,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)	
해외병원	- 기본 제출서류는 국내와 동일함 - 환자의 인적사항, 진단명,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,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 ※ 신속한 심사를 위해 가급적 영문(또는 중문, 일본)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

실손의료비 보상							
구 분	진단서 (병명확인서류)	진료비 세부내역서	진료비 계산서영수증	약제비 계산서영수증	기 타		
발급처	해당 의료기관				- 실손보험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불가		
실손입원	●	●	●	●	- 청구금액 50 만원 이하 시 병명 있는 입퇴원확인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		
실손통원	외래의료	●	●	●	- 실손통원(외래,처방)의 경우 FAX 접수, 복사본 가능 - 본인부담금: 외래, 처방 합산/ 동일상병 기준 - 본인부담금 10 만 이하: 보험금청구서에 병명만 기재(진단서 대체) 본인부담금 10 만 초과: 병명확인서류(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) 제출 (단, 응급의학과, 치과, 한방과 진료 청구 건 제외) - 다수 건일 경우 일자별/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필요 - 선택진료비 외 비급여합계금액 5 만 이상: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		
	처방조제	●			●		

※ 17년 4월 1일 이후 개정실손 : 진료비세부내역서 必구비 (개정실손이 포함된 중복계약 포함)  
 ※ 진단서外 대체 가능한 서류는 기타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, 청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 
 ※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(http://www.samsunglife.com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재해입증 서류 등 문의사항은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(☎1577-4118)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가 신속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

